



의안번호	제60호
------	------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1. 5. 17.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60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5. 17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통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 각 부서의 업무추진 인력을 보장하고
- 사회적 지위에 따른 약자에 대한 인권 등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는 가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 등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, 아동복지 지원을 강화하며,
- 논산형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, 에너지자립 도시조성 등 탄소중립을 실천할 조직 구성을 통해 환경 및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며,
- 지역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수관리 등 생태하천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사회적 지위에 따른 약자에 대한 인권 등 보호기능을 강화한 부서 명칭변경
- 과 명칭 변경(안) : **사회복지과** ⇨ **“복지인권과”**
- 저출산 대응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한 아동 전담 부서 신설
- 신설과 명칭(안) : **“아동복지돌봄과”**
- 기후변화 위기 대응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
- 신설과 명칭(안) : **“탄소중립과”**
- 지역하천의 중요성을 인식 치수 및 이수 종합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
- 신설과 명칭(안) : **“하천지하수과”**

○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정원 조정(안)

- 정원인원 : 총 정원 1,104 → 1,114명 (증 10명)

(※ 증원 : 기준인건비 범위 내 자체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른 증원)

▶ 5급 : 59명 → 62명(증 3명)

▶ 6급이하 : 990명 → 997명(증 7명)

○ 기구수

현 행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청 : 3국 / 4(실) / 28과 ○ 의회 : 1국 ○ 소속기관 : 2직속기관, 2사업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속기관 : 보건소(4과) 농업기술센터(3과) - 사 업 소 : 공공시설사업소, 서울사무소 ○ 하부행정기관 : 2읍 11면 2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청 : 3국 / 4(실) / 31과 ○ 의회 : 1국 ○ 소속기관 : 2직속기관, 2사업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속기관 : 보건소(4과) 농업기술센터(3과) - 사 업 소 : 공공시설사업소, 서울사무소 ○ 하부행정기관 : 2읍 11면 2동

○ 국·실·과 단위 조정

구 분	부 서	비 고
명칭변경	사회복지과 ⇨ “복지인권과”	
신 설	아동복지돌봄과 (동고동락국)	+3과
	탄소중립과 (동고동락국)	
	하천지하수과 (행복도시국)	

○ 정원조정 계획 및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(안)

구 분	당초	변경	비고
일반직 5급	59	62	증3
일반직 6급 이하	990	997	증7

※ 정원 증원 및 과 신설 등에 따라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개정조례안 공포 후 추경에 반영 예정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3) 규제심사 : 대상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04. 14. ~ 2021. 05. 04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붙임

5) 비용추계서 : 붙임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(☎ 041-635-2332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”를 “복지인권과, 주민생활지원과, 아동복지돌봄과”로, “환경과”를 “환경과, 탄소중립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기후변화대응, 탄소중립, 미세먼지, 에너지자원,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건설과”를 “건설과, 하천지하수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시장지원 및 에너지자원”을 “전통시장,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”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104명”을 “1,11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088명”을 “1,098명”으로 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논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환경과장”을 “탄소중립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”를 “복지인권과, 주민

생활지원과, 아동복지돌봄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환경과”를 “환경과, 탄소중립과”로 하고 “건설과” “건설과, 하천지하수과”로 한다.

- ③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”으로 한다.
- ④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”으로 한다.
- ⑤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3항1호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”으로 한다.
- ⑥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5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”으로 한다.
- ⑦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3항1호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”으로 한다.
- ⑧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, 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, 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”를 “복지인권과, 주민생활지원과”로 한다.
- ⑨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”으로 한다.
- ⑩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 1호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아동복지돌봄과장”으로 한다.
- ⑪ 논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인권과장”으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자치행정과장	김 병 호
	인 사 팀 장	양 미 호
	담 당 자	국 광 호 (746-5233)

【별표 6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총 계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		소 계	본 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	소계	의회 사무국
총 계	1,114	1,098	1,098				16	16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1	1					
일반직 계	1,068	1,052	1,052				16	16
3급	1	1	1					
4급	5	4	3	1			1	1
5급	62	60	36	7	2	15	2	2
6급 이하	997	984	984				13	13
전문경력관	3	3	3					
별정직 계	2	2	2					
6급상당 이하	2	2	2					
연구직 계	4	4	4		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4					
지도직 계	39	39	39					
지도관	4	4	4					
지도사	35	35	35					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동고동락국)</p> <p>① 동고동락국에 <u>마을자치분권과, 100세행복과,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평생교육과, 문화체육과, 농업정책과, 축수산과, 환경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동고동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의2(동고동락국)</p> <p>① ----- ----- <u>복지인권과, 주민생활지원과, 아동복지돌봄과</u>----- ----- <u>환</u> <u>경과, 탄소중립과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기후변화대응, 탄소중립, 미세먼지, 에너지자원,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5조(행복도시국) ① 행복도시국에 <u>뉴딜경제과, 산림공원과, 건설과, 도시정책과, 도시친화재생과, 안전도로과, 시민교통과, 원스톱허가과, 토지정보과, 맑은물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행복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지역경제, <u>시장지원 및 에너지 자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11. (생 략)</p>	<p>제5조(행복도시국) ① ----- -----<u>건설과,</u> <u>하천지하수과,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전통시장,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</u>-----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104명</u>으로 하고,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088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0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114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098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

개 정 안

【별표 6】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
(제22조제1항 관련)

【별표 6】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
(제2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총 계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		소 계	본 청	직속 기관	사업 소	읍면 동	소 계	의회 사무국
총 계	1,104	1,088	1,088			16	16	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1	1					
일반직 계	1,058	1,042	1,042			16	16	
3급	1	1	1					
4급	5	4	3	1		1	1	
5급	59	57	33	7	2	15	2	
6급 이하	990	977	977			13	13	
전문경력관	3	3	3					
별정직 계	2	2	2					
6급상당 이하	2	2	2					
연구직 계	4	4	4		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4					
지도직 계	39	39	39					
지도관	4	4	4					
지도사	35	35	35					

구 분	총 계	집행기관					의회 사무기구	
		소 계	본 청	직속 기관	사업 소	읍면 동	소 계	의회 사무국
총 계	1,114	1,098	1,098			16	16	
정무직 계	1	1	1					
시 장	1	1	1					
일반직 계	1,068	1,052	1,052			16	16	
3급	1	1	1					
4급	5	4	3	1		1	1	
5급	62	60	36	7	2	15	2	
6급 이하	997	984	984			13	13	
전문경력관	3	3	3					
별정직 계	2	2	2					
6급상당 이하	2	2	2					
연구직 계	4	4	4					
연구관								
연구사	4	4	4					
지도직 계	39	39	39					
지도관	4	4	4					
지도사	35	35	35					

- 1. 의견수렴 기간 : 2021. 04. 14 ~ 05. 04 (20일간)
- 2. 의견수렴 방법
 - 입법예고
- 3. 의견수렴 결과
 - 의견제출 : 총 2건
 - 의견내용 및 반영여부

의견제출자	의견내용	반영여부
조직관리 위원회	○ 하천관리과 기능 및 명칭 검토 - 부서명칭과 지하수업무 연관성검토	○ 조정 반영 - 당초) 하천관리과 ⇨ 하천지하수과 변경 반영 * 담당사무는 기존(안)으로 진행함.
건설과	○ 부서 명칭 및 업무 조정 - 하천관리과를 하천과로 변경 하천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안전총괄과의 자연재난팀 업무중 배수장 및 수문 관리 업무를 하천과로 이관 운영 (지하수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)	○ 미반영 - 현재 우리시 안전총괄부서를 운영중인 시정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총괄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장의 의견을 미반영함.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(정원의 총수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단가(30,000천원)로 산정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.0% 적용
- 직급 변동에 따른 직급간 인건비 차액을 반영하고 매년 보수인상률 3.0% 적용

나. 추계결과 : 1,873,301천원(5년 추가소요액)

- 5년 추가소요액 : 1,873,301천원 (단위 : 천원, 명)

구 분	1인기준 추가소요액	인원	금 액	연 도	합 계
합 계		13	352,845	5개년	1,873,301
기준인건비 9급 기준	30,000	10	300,000	5개년	1,592,740
직급 변경 차액 (9급 ⇒ 5급)	17,615	3	52,845	5개년	280,561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김 병 호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	
세 입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	
시 비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	
세 출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	
인건비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	
○ 보수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	
재원 조달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	
의존 재원	소 계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352,845	363,430	374,333	385,563	397,130	1,873,301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1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